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 관리 규정	문서번호	KPCQA-EQP-PA05
		제정일자	2024.06.24.
		개정번호	1

제·개정이력현황

No	제·개정일자	제·개정내용	비고
0	2023.07.11.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경영시스템 도입	시행일(2023.07.11.)
1	2024.06.24.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 반영	시행일(2024.06.24.)
2			
3			
4			
5			
6			
7			
8			
9			
10			

구분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성	글로벌사업센터	팀 원	서승연	서승연
검토	DX인증센터	팀 원	이예지	
승인	기후변화인증센터	팀 원	김정운	김정운

목 차

1. 목적 ····· 3

2. 적용범위 ····· 3

3. 인용문서 ····· 3

4. 용어 및 정의 ····· 3

5. 일반사항 ····· 5

6.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 적격성 기준 ····· 6

7.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 등록신청 ····· 10

8.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부여 범위 및 범위확대 ····· 11

9. 모니터링 ····· 11

10. 심사원의 승급 ····· 13

11.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처분(자격정지, 취소 및 반납) ····· 13

12.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교육훈련 ····· 14

• **양식목록**

[별지 제1호서식] 개인이력카드 ····· 15

[별지 제2호서식] 심사원 자격평가 체크리스트 ····· 16

[별지 제3호서식] 기술전문가 자격평가 체크리스트 ····· 17

1. 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뢰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주장에 대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사팀의 관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타당성평가 및 검증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을 수행하는 심사팀(선임심사원, 심사원, 심사원보, 기술전문가)의 적격성, 평가, 등록 등의 기준과 세부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심사팀 구성 및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타당성평가 및 검증 활동 규정(KPCQA-EQP-PA08)에 따른다.

3. 인용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발행연도가 표기된 경우 인용된 버전만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3.1 KS Q ISO 19011:2018 경영시스템 심사 가이드라인

3.2「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운영요령」

3.3「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세부운영지침」

4. 용어 및 정의

4.1 '심사팀'이란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원의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심사를 수행하도록 등록되고 심사에 배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을 말하며, 한명을 선임심사원/팀장으로 선임한다. 필요한 경우 기술전문가 및/또는 심사원보를 포함할 수 있다.

4.2 '심사팀장'이란 지정된 검증 심사활동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고, 심사팀을 관리하고 이끄는 자를 말한다. 필요한 경우, 심사팀의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4.3 '심사원'이란 선임심사원, 타당성평가/검증심사원, 타당성평가/검증심사원보로 구분하며 이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특정하지 아니한 모두를 지칭한다.

4.4 '선임타당성평가/검증심사원'(이하 '선임심사원'이라고 한다)이란 인증원에서 규정한 선임심사원의 자격을 충족한 자이며, 심사팀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5 '타당성평가/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고 한다)이란 특정 타당성평가/검증 분야 및/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타당성평가/검증 심사를 수행 및 보고에 책임이 있는 적격하고 공평한 자를 말한다.

4.6 '타당성평가/검증심사원보'(이하 '심사원보'라고 한다)란 심사원으로 등록된 자 중 검증심사 경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경험이 요구되는 심사원을 말한다.

4.7 '기술전문가'란 특정 검증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원 자격은 부여받지 못하였으나, 심사팀에 특정 지식 및/또는 전문 지식을 제공하도록 등록된 자를 말한다. 심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심사팀장 또는 검증심사원에게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단독으로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특정 지식 또는 전문성은 조직, 프로세스,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될 주제와 연관된 활동, 재정, 언어 또는 문화와 관련된다.

4.8 '자격부여'란 직무에 따라 적격성 기준이 자격평가를 통해 그 적격성이 확인된 인원을 인증원의 심사원 또는 기술전문가로 등록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9 '모니터링'이란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가 검증 활동 과정 중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고 검증의 원칙 및 심사원/기술전문가 활동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원활한 심사 업무수행 역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10 '승급'이란 심사원보에서 검증심사원으로 또는 검증심사원에서 선임심사원으로 등급을 올려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11 '외부 활동'이란 인증원의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가 외부에서 강의, 자문, 심의, 평가 등 인증원 검증 활동과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아니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 모두를 말한다.

4.12 '적격성/역량(competence)'이란 의도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지식 및 스킬을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적격성의 구성요소를 지식(knowledge), 스킬(skill), 태도(attitude)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격성의 기준과 평가는 적격성 구성요소의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5. 일반사항

5.1 인증원의 검증 활동과 관련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공평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며, 인증원의 기밀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서약한다. 서약에 관한 세부절차는 공평성 및 기밀유지 규정(KPCQA-EQP-PA02)에 따른다.

5.2 인증원의 심사원과 기술전문가 의무

5.2.1 검증 활동을 수행하는 심사팀의 모든 구성원은 인증원의 타당성평가 및 검증 활동 원칙(KPCQA-EQP-PA01)을 준수한다.

5.2.2 인증원의 심사원과 기술전문가는 심사팀에 배정되면,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로서 이해상충 등 해당 검증 활동과 관련하여 공평성 저해요인이 발생하거나

잠재적인 요인이 식별되면 즉시 인증원에 보고한다.

5.2.2.1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검증 프로그램별 지침에 특정하여 요구하지 아니한, 사전에 관여한 검증 활동에 대한 자문 등의 제공 시점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주장 또는 기업에 대해 심사팀으로 포함될 수 없으며 이를 식별한 즉시 인증원에 보고한다.

5.2.2.2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자문 또는 강의와 같이 외부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공평성 및 기밀유지 규정(KPCQA-EQP-PA02)에 따라 인증원에 신고한다.

5.2.3 인증원의 심사원과 기술전문가로 등록된 인원은 적격성 기준과 자격 등 개인이력에 관련한 사항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인증원에 이를 알린다.

6.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 적격성 기준

6.1 적격성 기준은 학력,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인증원은 해당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6.1.1 해당하는 경우, 검증 프로그램의 자격을 부여할 때 다음 사항의 근거에 따라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1) 적격성 기준을 충족한 직무에 대한 자격부여

(2) 해당하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분류하여 규정한 부문(sector)에 따라 해당 부문의 심사 자격

6.1.2 적용하고자 하는 검증 프로그램이 6.1.1항과 같이 요구하지 아니한, 이 규정의 적격성 기준을 충족한 직무에 대한 자격부여만 적용한다.

6.2 검증 프로그램에서 이 규정에서 요구된 사항 이외의 추가적인 및/또는 그 이

상의 기준을 요구한다면 해당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업무 지침(KPCQA-EQG-FP)에 수립하고 따른다. 이러한 경우, 이 절차서의 기준과 해당 검증 프로그램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격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해당 검증 프로그램의 심사원으로 자격 부여가 가능하다.

6.3 직무에 따른 적격성 기준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에 대한 적격성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6.3.1 심사원의 교육훈련

6.3.1.1 심사원의 교육훈련(공통)

심사원은 자격부여 및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1)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에 따른 KS Q ISO/IEC 17029(ISO 14065 내용 포함) 운영실무 과정 합격

(2) (1)항의 운영요령에 따른 KOLAS 종사자 보수교육을 3년에 1회 이상 이수

6.3.1.2 심사원의 교육훈련(검증 프로그램별)

6.3.1.2.1 심사원은 자격부여 및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1) 소유주의 요구사항에 따른 해당 검증 프로그램의 심사원 교육과정

(2) 프로그램 소유주의 요구사항에 따른 해당 검증 프로그램의 심사원 보수교육

6.3.1.2.2 검증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경우, 심사원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해당 검증 프로그램 및/또는 부문(sector) 심사원 자격 등록 및 유지

(2) 해당 검증 프로그램 및/또는 부분(sector) 심사경험 유지

6.3.2 심사원보

심사원보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적격성을 보유해야 한다.

6.3.2.1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학력과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1) 이공학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2) 이공학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3)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4)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6.3.3 검증심사원

검증심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적격성을 보유해야 한다.

6.3.3.1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학력과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1) 전과정평가(LCA)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2) (LCA)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3) 환경공학/신소재공학 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제품환경(발자국)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4) 이공학 분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제품환경(발자국)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6.3.3.2 다음 사항의 심사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1) 심사원보로서 3개 제품 이상의 검증심사 수행경력 보유자

6.3.4 선임심사원

선임심사원은 검증심사원 중 다음 사항에 대한 적격성(심사경력)을 보유한 인원으로 한다.

(1) 검증심사원으로서 누계 7개 제품 이상의 검증심사를 수행한 경우

6.3.5 기술전문가

기술전문가는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의 적격성을 보유해야 한다.

(1) 국내·외 제품 환경 정보 검증 관련 제도(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환경성적표지 및 해외 환경발자국 인·검증)의 심사원

(2) 전과정평가(LCA) 분야 컨설팅 또는 정밀 검토 등의 경력 10년 이상

6.3.6 실무경력 요건

위 조항에서 언급된 실무경력에 대한 요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검증심사원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기준

대상	분야	경력 인정기준
선임심사원, 검증심사원	환경(탄소)성적표지 등 발자국 검증취득 관련 분야	100% 인정 (단, 심사횟수 3건이하 불인정)
	전과정평가 등 제품환경 관련 분야(컨설팅 포함)	100% 인정
	환경경영시스템(에너지, 녹색) 구축 및 검증, 컨설팅 관련 분야	소요기준의 50% 인정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소요기준의 50% 인정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소요기준의 50% 인정
	국제 제품환경규제 대응 관련 분야	소요기준의 30% 인정
심사원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소요기준의 100% 인정
	경영시스템 검증, 제품 검증 및 관련 컨설팅 분야	소요기준의 50% 인정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소요기준의 50% 인정
	국제 제품환경규제 대응 관련 분야	소요기준의 30% 인정

* 중복인정 원칙적 불가(명확하게 서로 다른 실무를 동 기간에 진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중복인정 가능, 단 인정 기간은 해당 기간의 150% 초과할 수 없음)

6.3.7 심사원의 지식, 스킬, 태도

심사원은 다음 사항의 지식, 스킬 및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1) 지식

1) 검증 관련 활동 및 기술

2) 관련 기술 및 분야의 사안을 포함하는 정량화, 모니터링 및 보고

(2) 스킬

1) 검증 요구사항 및 지침과 그 적용 가능성

2) 해당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관할권(jurisdictions)에서의 실행

3) 데이터 및 정보심사 전문성

- 의뢰자가 관련 환경정보를 효과적으로 식별, 수집, 분석 및 보고를 실시하였는지와 모든 오류와 부적합에 대해 체계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였는지 결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평가
- 증거수집계획 설계
- 데이터의 사용 및 연관 리스크 분석
- 데이터 및 데이터시스템의 오류 식별
- 다양한 데이터의 흐름이 성명서의 중대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3) 태도

1) 적절한 언어의 사용

2) 효과적인 의사소통

6.3.8 심사팀장의 리더십

심사팀장은 6.3.7항에 추가하여 심사팀장으로서 다음 사항의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증 수행 능력

(2) 심사팀 관리 능력

7.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 등록신청

7.1 신청방법

인증원(탄소발자국 검증팀)의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에 대한 심사원 및/또는 기술전문가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이력카드(KPCQA-EQP-PA05-F01)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인증원으로 제출한다.

7.2 자격 평가, 부여 및 등록

7.2.1 인증원은 심사원에 대해 심사원 자격평가 체크리스트(KPCQA-EQP-PA05-F02)를 활용하여 자격평가를 실시하고 기술전문가에 대해 기술전문가 자격평가 체크리스트(KPCQA-EQP-PA05-F03)를 활용하여 자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자격 부여를 승인한다.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신청한 자에게 해당 결과를 공문으로 안내한다. 다만, 승인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안내한다.

7.2.2 기술전문가로 등록된 자는 심사원보도 함께 등록할 수 있으며, 심사원의 심사경험 횟수를 기준으로 검증심사원 승급도 할 수 있다.

8.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부여 범위 및 범위확대

8.1 인증원의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부여 시 자격부여 범위는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별(해당하는 경우, 분야별 포함)로 부여한다. 해당하는 경우, 자격부여 범위에 기준이 되는 분류기준은 각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업무 지침(KPCQA-EQG-FP)에 따른다.

8.2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부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자는 확대하고자 하는 범위에 대해 7항에 따라 신청한다.

9. 모니터링

9.1 인증원은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적격성 유지의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방법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이력 갱신

(2)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과정 중 업무수행 적격성

9.2 인증원은 매년 초 타당성평가/검증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교육, 훈련, 자격 등의 이력을 갱신해야 하며, 공문을 통해 이력의 최신화(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도 첨부)를 실시한다.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타당성평가/검증 활동과 관련된 이력을 인증원으로 회신한다.

9.3 인증원은 매년 현장 관찰, 보고서 검토, 인터뷰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심사원 자격평가 체크리스트(KPCQA-EQP-PA05-F02) 및 기술전문가 자격 체크리스트(KPCQA-EQP-PA05-F03)에 모니터링 결과를 유지한다. 심사팀장에게 심사팀장을 제외한 심사팀의 업무수행 모니터링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현장 관찰 기법을 통한 검증 심사 업무수행 모니터링은 그 주기를 (표 2)와 같이 검증 활동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표 2) 검증 활동 리스크에 따른 모니터링 주기

구분		해당년도 활동빈도		
		0회/년	1~2회/년	3회 이상/년
이전년도 해당 검증 프로그램 심사경험 횟수	3회 이상	낮은 리스크	낮은 리스크	낮은 리스크
	1~2 회	낮은 리스크	중간 리스크	중간 리스크
	경험없음	낮은 리스크	중간 리스크	높은 리스크
리스크 강도		낮은 리스크	중간 리스크	높은 리스크
모니터링 횟수		1회 이상/3년	1회 이상/2년	매 심사 시

9.3.1 여러 분야 및/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격이 부여된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각 분야 및/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하며, 특정 분야 및/또는 프로그램의 검증 활동빈도가 적을 경우 다른 분야 및/또는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결과로 대체가 가능하다.

10. 심사원의 승급

10.1 심사원의 적격성 기준에 따라 승급 요건이 갖춰진 자는 승급신청이 가능하며, 7항의 절차와 동일하게 신청한다.

10.2 인증원은 승급 신청 결과를 공문으로 안내한다. 다만, 승인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안내한다.

11.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처분(자격정지, 취소 및 반납)

11.1 사항의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 심사원 또는 기술전문가 자격이 정지된다.

(1) 모니터링 결과가 적용되는 배점의 70%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검증심사 업무 수행에 제한이 되는 경우

(2) 모니터링 결과 또는 의뢰자의 불만 사유가 활동 원칙을 위배한 사항인 경우 (단, 금품, 향응에 관한 사항은 제외)

(3)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교육훈련 및/또는 자격(자격의 말소 또는 유효기간 종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기타 검증심사 업무 수행에 제한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1.1 인증원은 11.1항에 따라 해당 심사원/기술전문가에게 자격정지 사유와 다음 사항의 조치가 수행하도록 공문으로 안내한다.

(1) 11.1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관찰 업무 2회 및/또는 관련 교육 이수

(2) 11.1항의 (2)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교육 이수

(3) 11.1항의 (3)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교육훈련의 이수 및/또는 자격의 갱신

(4) 11.1항의 (4)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에 제한이 되는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

11.1.2 자격이 정지된 심사원 또는 기술전문가는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해당 근

거를 인증원으로 송부하고, 인증원은 공문을 통해 해당 심사원 또는 기술전문가에게 업무재개를 안내한다.

11.2 인증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 시 해당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부여 범위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자격취소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1) 활동 원칙 중 금품수수, 향응에 관한 요구사항을 위배한 경우

(2) 심사결과의 조작 등 인증원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경우

11.2.1 자격취소 승인 시 해당 사유를 공문으로 안내한다.

11.2.2 자격이 취소된 자가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안내받은 공문의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의견제시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제시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종결한다.

11.2.3 자격이 취소된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인증원은 해당 사항을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문으로 안내한다.

11.2.4 개인 사유에 의해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가 자격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인증원에 통보한다.

12.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의 교육훈련

12.1 심사원은 6.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12.1.1 인증원은 심사원(해당하는 경우, 기술전문가 포함)의 자격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훈련을 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

12.2 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이수/합격한 교육훈련에 대해 그 이력 및 증빙서류를 인증원에 제공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이력카드

성명		소속		부서	
전화		이메일			

학력	기간	학교, 학과 및 전공

경력	기 간	직장, 부서, 업무분야, 직위, 직무

경험	기 간	평가, 심사, 전문가 활동 등

자격 · 면허	기간 또는 일시	종 류	시행/발행처

교육 훈련 · 자문 강의	기 간	과 정 명(시간)/교육기관	비 고

[주기] 엑셀프로그램 문서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종료 후 4년간 보존한다.

1. 엑셀프로그램 사용
2. 인쇄시 바닥글 적용: 좌측: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중앙: 페이지, 우측 : 양식번호
3. 인쇄용지는 A4 횡서식 (297*210)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원 자격평가 체크리스트

대상자명		소속 기관/부서			
대상직무		최근 평가일자		최근 평가결과	

번호	평 가 항 목	평가방식	평가결과	증빙자료	적용기준
1	학력 및 실무경력 보유 - 전문학사 : 3년 이상 경력 - 학사 : 4년 이상 경력 - 석사 : 2년 이상 경력	서류확인	□ 적격 □ 부적격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6]
2	필수 교육 이수여부 - 해당 전문인력 자격 시험합격 - 3년 1회 이상 보수교육 이수	서류확인	□ 적격 □ 부적격		상동
3	검증 기준에 대한 이해 능력	시험평가	□ 적격 □ 부적격		상동
4	검증방법과 절차 및 품질시스템 이해 및 관리능력	시험평가	□ 적격 □ 부적격		상동
5	검증 스킴의 형식 및 특성에 대한 이해능력	시험평가	□ 적격 □ 부적격		상동
6	검증심사, 검증서 작성 및 결과해석 능력	시험평가	□ 적격 □ 부적격		상동
7	2차 데이터 활용 능력 및 지식 (프로그램 구등 및 활용 능력)	실기평가	□ 적격 □ 부적격		-

결과	결과에 따른 조치 방법
1~7 평가항목의 해당 조건 모두 충족시	□ 자격부여 가능
1~7 평가항목의 해당 조건 중 1개 항목이라도 불충족시	□ 자격 미부여 (재교육후 재평가)

[평가자 종합의견]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 가 자 : (서명)

[주기] 심사원 자격평가 체크리스트는 출력물로 관리한다.

1. 엑셀프로그램 사용
2. 인쇄시 바닥글 적용: 좌측: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중앙: 페이지, 우측 : 양식번호
3. 인쇄용지는 A4 횡서식 (297*210)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전문가 자격평가 체크리스트

대상자명		소속 기관/부서		
대상직무		최근 평가일자	최근 평가결과	

번호	평 가 항 목	평가방식	평가결과	증빙자료	적용기준
1	학력 및 실무경력 보유 - 전문학사 : 3년 이상 경력 - 학사 : 4년 이상 경력 - 석사 : 2년 이상 경력	서류확인	□ 적격 □ 부적격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6]
2	국내·외 제품 환경정보 검증 관련 제도(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환경성적표지 및 해외 환경발자국 인증)의 심사원 또는 그에 상당한 경험(전과정평가 분야 컨설팅 또는 정밀 검토 등의 경력 10년 이상) 보유 여부	서류확인	□ 적격 □ 부적격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운영요령

결과	결과에 따른 조치 방법
1~2 평가항목의 해당 조건 모두 충족시	□ 자격부여 가능
1~2 평가항목의 해당 조건 중 1개 항목이라도 불충족시	□ 자격 미부여 (재교육후 재평가)

[평가자 종합의견]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 가 자 : (서명)

[주기] 기술전문가 자격평가 체크리스트는 출력물로 관리한다.

1. 엑셀프로그램 사용
2. 인쇄시 바닥글 적용: 좌측: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중앙: 페이지, 우측 : 양식번호
3. 인쇄용지는 A4 횡서식 (297*210)